

## **실손의료보장 계약전환제도 특약**

제 1조 [ 적용범위 및 효력 ]

제 2조 [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 및 공제내용 등 ]

제 3조 [ 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 ]

제 4조 [ 전환전계약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

제 5조 [ 계약전환의 철회 ]

제 6조 [ 준용규정 ]

## **실손의료보장 계약전환제도 특약**

### **제 1조 [ 적용범위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보장계약(이하 ‘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021년 7월 1일 이후 판매되는 ‘무배당 급여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계약전환용)’상품(이하 ‘전환후계약’이라 합니다)으로의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전환전계약이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실효 상태가 아닌 유효한 계약인 경우에 합니다.

② 제1항의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 **제 2조 [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 및 공제내용 등 ]**

전환후계약의 보장종목은 전환전계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환후계약과 전환전계약의 보장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환하여 드립니다.

### **제 3조 [ 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 ]**

- ① 회사는 전환후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전환후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환일부터 전환전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 4조 [ 전환전계약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

제3조(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전계약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후 알릴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조항의 효력은 전환후계약의 최대 재가입기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제 5조 [ 계약전환의 철회 ]**

- ① 계약자는 계약전환을 청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전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에 따른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전환의 철회를 신청한 신청일이 계약전환 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계약을 철회한 경우, 제3조(전환후계약의 보장개시일)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전계약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 6조 [ 준용규정 ]**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환후계약의 약관을 따릅니다.